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9조에 의거 건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관계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자 및 수혜금액) 교내 각종 장학금의 수급자수와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 제 2조의 기관(단체, 개인 등)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금은 수급자 및 금액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4조(지급대상) 교내외 각종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당해학기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수혜기간)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원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대상기준은 재학기간 계속 적용한다. 단, 연구장려 장학금은 수업연한으로 한다.(개정 2013.3.11.)

③ 이중수혜를 받을 수는 있으나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시기) ① 교내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등록전 학비감면하여 지급한다.

② 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시기에 지급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교내장학금은 현금이나 해당금액 학비감면으로 한다.

② 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회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학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2. 장학금 신청절차 또는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3. 자퇴 또는 제적이 될 경우

제 2 장 장 학 금

제9조(구분)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교내장학금 : 교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1. 일반대학원 장학금
2. 특수대학원 장학금
3. 기타 교내장학금

② 교외장학금 : 국가기관 또는 교외기관 및 교외인사가 본 대학원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③ 전항(①~②)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 절 일반대학원 장학금

제10조(종류) 일반대학원의 장학금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장학금
2. 성적장학금
3. 건양인재장학금
4. 연구장려장학금

제11조(입학장학금) 본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0%를 지급한다.

제12조(성적장학금) ① 본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 인자로 직전학기 평점이 4.0이상인 자에 한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의 30%를 지급한다.

② 장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을 근거로 매학기 선발한다.

제13조(건양인재장학금) 본교 출신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학업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입학장학금 및 성적장학금에 추가로 등록금의 10%를 감면한다.

제14조(연구장려장학금) ① 본 대학원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 전일제(Full-Time) 대학원생으로 진학하는 경우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06.)

② 연구장려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 입학지원 시 연구장려장학생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연구장려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별표1>의 장학생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활동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1개 학기 휴학이 가능하다. 단, 질병에 의한 휴학은 2개 학기까지 가능하다.

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학년도부터 졸업 시까지 계속 지급한다.

1.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학칙에 의거 제적, 퇴학, 전과 등으로 인하여 학적이 변동된 자
3. 휴학기간 만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⑥ 제14조 ⑤항 1~3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며,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한다.

⑦ 제14조 ⑤항 1~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혜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연구장려장학생을 배정하지 않는다.

제 2 절 특수대학원 장학금

제15조(종류) 특수대학원 장학금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비보조장학금
2. 수업보조장학금

제16조(학비보조장학금) ① 본교 출신 및 교직원 또는 협약관계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선발기준 및 지급금액은 <별표2>과 같다.

② 학비보조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장학생 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며, 구비서류는 별도로 공지한다.

제17조(수업보조장학금) ①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자로 교수의 수업준비를 돕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별도로 전한다.

② 장학생은 매학기 선발하며 수혜기간은 한학기로 한다. 학생이 등록하는 동안 연속하여 수업보조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

제 3 절 기타 교내장학금

제18조(기초의학활성화장학금) ① 본교 의과대학에서 출신으로 본 대학원 기초의학교실에서 기초전공의 과정을 밟는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학년도부터 졸업 시까지 계속 지급한다.

1.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학칙에 의거 제적처분을 받은 자

3. 본인 의사에 의해 퇴학한 자

제 4 절 교외장학금

제19조(교외장학금) ① 교외장학금이란 교외기관 및 교외인사가 본 대학원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교외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외부 장학재단
4. 기타 각종 기관 및 개인

③ 교외장학금의 신청, 제출서류, 선발방법, 지급인원, 지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 기탁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지원자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지원장학생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특별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4조(연구장려장학금)은 소급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1>

연구장려장학생 의무사항

연구장려장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 요건으로 다음사항을 충족하여야한다.

구분	인문사회	의학·이공
박사	학진등재지 2편 이상	SCI 1편 이상
석사	학진등재지 1편 이상	

2. 게재 승인된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3. SCI(E), SSCI(E), Index Medicus, AHCI, SCOPUS도 SCI에 포함시킨다.
4. 수료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게재(게재 승인)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학생은 수혜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하며, 미 이행시 해당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연구장려장학생을 배정하지 않는다.
5. 장학생은 주저자나 제1저자로 게재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공동 주저자의 경우, 1/n로 인정한다.

(양식1)

연구장려장학생 지원서

지원자	성명		주민번호	-	
	입학학기	학년도 학기	학과		
			전공		
학적사항	학부과정	년 월 대학교 학과 졸업	성적	총 평점평균 ()/4.5만점	
	석사과정	년 월 대학교 학과(졸업/졸업예정)	성적	총 평점평균 ()/4.5만점	
E-mail			연락처	자택	
				H.P	
<p>상기인은 연구장려장학생 모집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자 _____ ①</p>					
교수 (지도예정) 추천사유					
<p>상기 학생은 학습능력 및 연구능력이 우수하여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연구장려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학과 추천(지도예정)교수 : _____ ①</p>					
<p>건양대학교 대학원장 귀하</p>					

2017.02.14.기준

(양식2)



연구장려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학 과 :
 과 정 :
 성 명 :
 생년월일 :
 수험번호 :

상기인은 연구지원장학생으로 다음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행정적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대학원 연구장려장학생”으로써 학교생활에 충실할 것이며 생활면에서도 타의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나는 “대학원 연구장려장학생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연구장려장학생 의무사항>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 요건으로 다음사항을 충족하여야한다.

구분	인문사회	의학.이공
박사	학진등재지 2편 이상	SCI 1편 이상
석사	학진등재지 1편 이상	

- 나. 게재 승인된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SCI(E), SSCI(E), Index Medicus, AHCI, SCOPUS도 SCI에 포함시킨다.
 라. 수료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게재(게재 승인)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학생은 수혜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하며, 미 이행시 해당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연구장려장학생을 배정하지 않는다.
 마. 장학생은 주저자나 제1저자로 게재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공동 주저자의 경우, 1/n로 인정한다.

3. 나는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장학생 지원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그리고 학칙에 의거 징계, 제적처분이나 퇴학 한 경우 수혜 받은 장학금액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 기 인 : _____ (인)
 추천(지도예정)교수 : _____ (인)

건양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양식3)



연구장려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학 과 :
 과 정 :
 성 명 :
 학 번 :

학회명				
게재지명				
발표연월		년 월		
논문명	한글			
	영문			
게재여부	게재		게재승인	
ISSN				

- 별첨 1. 연구실적물 1부.
 2. 논문게재승인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신청논문 및 투고에 대한 접수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끝.

20 년 월 일

상 기 인 : _____ (인)

지도교수 : _____ (인)

건양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표2>

학비보조장학금 지급기준

1. 2015학년도 입학자

○ 일반대학원

구 분	장학금 명칭	신입생		재학생		비고
		본교출신	본교출신 외	본교출신	본교출신 외	
일반	입학장학	30%	30%			입학금 감면 없음
	성적장학			30%	30%	직전학기 평점 4.0이상 취득시 적용
	건양인재장학	10%		10%		

○ 특수대학원(경영사회복지, 보건복지, 군사경찰행정, 상담, 바이오비임상)

(단위:천원)

구 분	등록금 대비 학비 감면금액			
	학교법인 건양학원(의료법인 김안과병원, 건양대부여병원 포함) 동문 또는 교직원 본인/ 배우자/직계자녀, 현역군인	외국인,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관련기관 종사자	기타
인문사회	1,200(입학금의 50% 추가 감면)	1,200	900	600
이공	1,350(입학금의 50% 추가 감면)	1,350	1,000	650

※ 관련기관종사자 범위

1. 공통 : 건양학원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및 의료법인 김안과 원내 사업체 정규직 근무자, 전문기업인교수
2. 보건복지대학원 : 공공의료복지단체 및 기관 종사자
 - 공공의료복지단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업무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료복지인 경우
 - ②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인가 된 곳
3. 바이오비임상대학원 : 제약회사 및 BIO관련 벤처회사 종사자, 국가출연기관, MOU체결 기관 종사자

※ 군위탁생 : 등록금의 50%감면(학군제휴 운영협의회 권고사항)

2. 2014학년도 입학자

○ 일반대학원

(단위:천원)

구 분	장학금 명칭	신입생		재학생		비고
		본교출신	본교출신 외	본교출신	본교출신 외	
일반	입학장학	30%	30%			입학금 감면 없음
	성적장학			30%	30%	직전학기 평점 4.0이상 취득시 적용
	건강인재장학	10%		10%		

○ 경영사회복지대학원, 군사경찰행정대학원, 상담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바이오비임상대학원

(단위:천원)

구 분	등록금 대비 학비 감면금액			
	본교출신/ 건양학원 학교법인 교직원 및 의료법인 김안과 병원 임직원 본인/배우자/직계자녀로서 대학원 재학중인 자, 현역군인	외국인,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관련기관 종사자	기타
인문사회	1,200(입학금의 50% 추가 감면)	1,200	900	600
이공	1,350(입학금의 50% 추가 감면)	1,350	1,000	650

○ 교육대학원

(단위:천원)

구 분	등록금 대비 학비 감면금액			
	본교출신/ 건양학원 학교법인 교직원 및 의료법인 김안과 병원 임직원 본인/배우자/직계자녀로서 대학원 재학중인 자	현직교원	관련기관 종사자	기타
교육대학원	1,150(입학금의 50% 추가 감면)	1,150	850	550

※ 관련기관종사자 범위

1. 공통 : 건양학원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및 의료법인 김안과 원내 사업체 정규직 근무자, 전문기업인교수
2. 교육대학원 : 사회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문화예술전문가, 사회교육전문가로 3년 이상 활동한 자(학원, 문화원, 음악협회, 미술협회)
3. 보건복지대학원 : 공공의료복지단체 및 기관 종사자
 - 공공의료복지단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업무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료복지인 경우 ②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인가 된 곳
4. 바이오비임상대학원 : 제약회사 및 BIO관련 벤처회사 종사자, 국가출연기관, MOU체결 기관 종사자

※ 교육대학원 : 자매고 소속 교직원은 입학금의 50% 추가 감면제(자매고 현황 참고)

※ 군위탁생 : 등록금의 50%감면(학군제휴 운영협의회 권고사항)

3. 2013학년도 입학자

○ 일반대학원

(단위:천원)

구 분			등록금 대비 학비 감면금액			
			본교출신/ 건양학원 학교법인 교직원 및 의료법인 김안과 병원 임직원 본인/배우자/직계자녀로서 대학원 재학중인 자	외국인학생	현역군인 관련기관종사자	기타
일반	박사	인문사회	1,000(입학금의 50% 추가 감면)	1,350	1,000	650
		이공	1,200(입학금의 50% 추가 감면)	1,600	1,200	800
		의학	1,800(입학금의 50% 추가 감면)	2,400	1,800	1,200
	석사	인문사회	1,250(입학금의 50% 추가 감면)	1,250	950	600
		이공	1,600(입학금의 50% 추가 감면)	1,600	1,200	800
		의학	2,350(입학금의 50% 추가 감면)	2,350	1,750	1,150

○ 경영사회복지대학원, 군사경찰행정대학원, 상담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바이오비임상대학원

(단위:천원)

구 분		등록금 대비 학비 감면금액			
		본교출신/ 건양학원 학교법인 교직원 및 의료법인 김안과 병원 임직원 본인/배우자/직계자녀로서 대학원 재학중인 자, 현역군인	외국인,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관련기관 종사자	기타
인문사회		1,200(입학금의 50% 추가 감면)	1,200	900	600
이공		1,350(입학금의 50% 추가 감면)	1,350	1,000	650

○ 교육대학원

(단위:천원)

구 분		등록금 대비 학비 감면금액			
		본교출신/ 건양학원 학교법인 교직원 및 의료법인 김안과 병원 임직원 본인/배우자/직계자녀로서 대학원 재학중인 자	현직교원	관련기관 종사자	기타
교육대학원		1,150(입학금의 50% 추가 감면)	1,150	850	550

※ 관련기관종사자 범위

1. 공통 : 건양학원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및 의료법인 김안과 원내 사업체 정규직 근무자, 전문기업인교수
2. 교육대학원 : 사회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문화예술전문가, 사회교육전문가로 3년 이상 활동한 자(학원, 문화원, 음악협회, 미술협회)
3. 보건복지대학원 : 공공의료복지단체 및 기관 종사자
 - 공공의료복지단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업무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료복지인 경우
 - ②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인가 된 곳
4. 바이오비임상대학원 : 제약회사 및 BIO관련 벤처회사 종사자, 국가출연기관, MOU체결 기관 종사자

※ 교육대학원 : 자매고 소속 교직원 은 입학금의 50% 추가 감면제(자매고 현황 참고)

※ 군위탁생 : 등록금의 50%감면(학군제휴 운영협의회 권고사항)

4.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과정	대학원명	계열	장학비율(등록금 감면비율)					
			본교출신/ 건양학원 학교법인 교직원 및 의료법인 김안과 병원 임직원 본인/배우자/직계자녀로서 대학원 재학중인 자	현역 군인	외국인 학생 군위탁생	현직 교원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근무자	기타
박사	일반	인문사회	40% (입학금 면제)	40%	50%	30%		
		이공						
		의학						
석사	일반	인문사회	50% (입학금면제)	40%	50%	30%		
		이공						
		의학						
	경영행정	인문사회	50%(입학금면제)		50%	30%	50%	30%
	국방관리	인문사회	50%(입학금면제)		50%	30%	50%	30%
	교육	인문사회	50% (입학금 면제)	50%		30%		
	보건복지	인문사회	50%(입학금면제)		50%	30%	50%	30%
		이공						
	상담	인문사회	50%(입학금면제)		50%	30%	50%	30%
	바이오 비임상	이공	50%(입학금면제)		50%	30%	50%	30%

- ※ 1. 교육대학원 입학 또는 재학시. 자매고 소속 교직원은 입학금 추가면제
 2. 교육대학원 입학 또는 재학시 사회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문화예술전문가, 사회교육전문가로 3년 이상 활동한 자는 40% 감면(학원, 문화원, 음악협회, 미술협회)
 3. 보건복지대학원 입학 또는 재학시 공공의료복지단체 및 기관 종사자는 40% 감면
 - 공공의료복지단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업무의 주된 목적이 공공 의료복지인 경우, ②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인가 된 곳
 4. 건양학원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및 의료법인 김안과 원내 사업체 정규직 근무자는 40% 감면
 5. 전문기업인교수는 40% 감면, 외국인학생은 50% 감면
 6. 바이오비임상대학원 입학 또는 재학시 제약회사 및 BIO관련 벤처회사 종사자는 40% 감면